2 공제제도 개편

1. 자녀 등에 대한 인적공제 제도 개편(상증법 §18, §20, §21)

현 행	개 정 안
□ (기초·일괄공제)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다음의 인적공제액 공제	□ (기본공제) 상속인·수유자의 개별 상속취득재산에서 다음의 인적공제액 공제
○ (기초공제) 2억원	○ 상속인(배우자 제외)
○ (일괄공제) 5억원	- (직계존비속) 5억원
- (요건) 기초공제와 추가공제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*	- (기타) 2억원
* 단,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적용 배제	○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*
	* 상속포기로 상속받는 후순위 상속인 포함
	- (직계존비속 등*) 5천만원
	*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 등 포함
	- (기타 친족*) 1천만원
	*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
□ 추가공제	□ 상속인·수유자별 추가공제 적용
○ (자녀) 1명당 5천만원	○ 기본공제로 통합
○ (미성년) 19세까지 연수×1천만원	○ (좌 동)
○ (장애인) 기대여명×1천만원	
○ (연로자) 1명당 5천만원	

<개정이유>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인적공제제도 개편

<적용시기>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

2. 배우자 상속공제 합리화(상증법 §19)

현 행	개 정 안
□ (공제방법) 전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배우자 실제 상속금액 공제	□ 배우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 공제
○ '실제 상속금액'에서 **사전증여재산 제외**(공제 대상에서 배제)	○ '상속받은 금액'에 **사전증여재산 포함**(공제 대상에 포함)
□ (공제한도) ①·② 중 작은 금액	□ 한도 조정
①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상당액 (사전증여재산분 제외)	①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상당액 (사전증여재산분 포함) - 다만, ①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**10억원 한도내에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 공제**
② 30억원	② (좌 동)
□ (최소공제액) 배우자 상속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 공제	□ 최소공제액 폐지
□ (공제요건) 분할기한 내 상속재산 분할	□ 미분할시 공제범위 명확화
○ (분할기한)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	
<신 설>	○ 다만, 상속재산을 **분할하지 않은 경우 법정상속분 상당액**(10억원 이내) **공제** ※ (현행) 분할기한 내 분할하지 않은 경우 5억원 공제(국세청 통칙)

<개정이유>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배우자공제 합리화

<적용시기>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